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5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구자근 · 권영진
강선영 · 조은희 · 강대식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 030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